

도급계약서

1. 공사명 : (주)IPS 진위 PJT. Utility System 및 배관설치공사
2. 공사장소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332-14
3. 착공년월일 : 2010년 09월 15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1년 2월 28일
5. 계약금액 : 일금 이십칠억오천만(₩2,750,000,000)원정 (부가가치세 별도)
6. 선급금(30%) : 일금 팔억이천오백만(₩825,000,000)원정 (부가가치세 별도)
중도금(50%) : 일금 일십삼억칠천오백만(₩1,375,000,000)원정 (부가가치세 별도)
잔금(20%) : 일금 오억오천만(₩550,000,000)원정 (부가가치세 별도)
7. 대금 지급 방법 : 선급금(30%), 중도금(50%), 잔금 (20%)
 - 1) 선급금 : 계약 완료 후 익월 말 현금지급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
 - 2) 중도금/잔금 :
 - * 중도금 : 공정율 80% 진행시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익월 말 4개월 어음 (아토 결제조건)
 - * 잔금 : 준공 완료 후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익월 말 4개월 어음 (아토 결제조건)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지체 상금율	하자담보책임기간
Utility 공사	₩2,750,000,000	(10) % 원정	0.3 %	2년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 붙임서류 : 1.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2. 계약내역서 1부
3. 현장설명서 1부

2010년 09월 06일

도급인

주식회사 아토

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2다 302

대표이사 문상영 (인)

수급인

주식회사 에이치앤씨

주소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SK 벤티움 102동 1204호

대표이사 임재영 (인)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 1 조 [총칙]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도급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으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4.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 3 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6.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7.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9. “공사감리원”이라 함은 제 6 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갑”이 정한 공사감리원을 말한다.

제 3 조 [계약문서]

- ① 계약문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에 공사계약특수조건은 도급계약 일반조건에 대하여 우선적인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를 보충하는 효력을 가진다. 다만, 그 내용이 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 변경 후 상대방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제 4 조[공사감독원]

① “갑”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 및 변경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을”에 대한 지시.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 및 하자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5.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일

② “갑”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 및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조[현장대리인의 배치]

① “을”은 착공전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공사의 주된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로 선임한 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현장대리인은 법령의 규정 또는 “갑”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한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해 선임된 현장대리인이 제 4 조의 규정에 의해 선임 또는 선임 후 변경된 공사감독원의 지시사항을 합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에게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6 조[공사감리]

① “을”은 공사감리원으로부터 계약된 공사의 수행에 대하여 지휘·감리를 받아야 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에 대하여도 검사 또는 시험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은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공사감리원과 “갑”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피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한 후 즉시 공사감리원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공사감리원이 필요로 하여 공사시공에 필요한 상세도, 시공도 및 공작도의 작성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시공시에는 공사감리원의 검사·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 7 조 [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가격 산출내역서]

“을”은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설계서(도서, 시방서, 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기초로 작성한 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가격 산출내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的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갑”과 “을”은 공사기간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단, “을”的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착공일 지연에 대해선 지체상금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③ 준공일은 “갑”과 “을”이 협의한 준공예정일까지 “을”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④ “을”은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월별 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 장비 및 자재 현황

3. 공정 현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⑤ “갑”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공정만회대책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을”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 9 조[자재의 검사등]

-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중에서 “갑”이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을”은 사용전에 “갑”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제 1 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을”은 “갑”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갑”이 판명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해선 “갑”과 “을”이 계약기간의 연장 등에 관해 협의할 수 있다.
- ④ “을”이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불합격된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的 부담으로 한다.
- ⑤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공사감리원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 ⑥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 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공사감리원의 참여 없이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갑”的 서면승인을 받고 사진, 비디오 등으로 시공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
- ⑦ “을”은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에게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⑧ “을”이 제 1 항 내지 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갑”은 공작물의 철거,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단, “을”的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공사의 진행]

- ① “갑”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 기한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을”은 야간 및 휴일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 11 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 ① “을”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갑”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 ②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고,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 하에 산업재해 등 기타 위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상의 하자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的 응급처치 이후,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2 조[응급조치]

- ① “을”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긴급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을”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을”的 부담으로 제 3 자로 하여금 응급조치 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 1 항 및 제 2 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하며,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제 11 조 2 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 13 조[공사기간의 연장]

- ① “갑”的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태 등 “을”的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공사예정공정표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갑”은 제 1 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제 14 조[부적합한 공사]

①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경우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갑”的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을”的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갑”은 설계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에 관해선 지체없이 “을”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설계서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선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갑”的 동의 없이 설계서와 상이하게 시공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한 경우, 해당 부분은 공사기성에서 제외한다.

제 15 조[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을”은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하여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손해의 부담에 있어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6 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단,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액이 최초 계약금액 대비 3% 이상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

3%를 초과한 증감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하며, 3% 이하의 증감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공사가격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공사가격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공사가격 산출내역서상의율을 적용한다.
- ③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 17 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 15 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공사가격 산출내역서상의율을 적용한다.

제 18 조[기성부분금]

-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기성부분은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른 공사가격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단, 기성부분은 실제로 자재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공사가격 산출내역서상 비목을 기준으로 한 분량을 말하는 것으로 검사에 합격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갑”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18 조[준공검사]

- ①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을”的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갑”은 준공검사에 있어서 “을”的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제 1 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 1 항 후문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을”은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을”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갑”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을”에게 공사목적물의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 19 조[대금지급]

①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본 계약서 전문의 대금지급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을”은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한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이러한 사실을 “갑”으로부터 확인받은 뒤 도급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수한 이후 “갑”的 대금 지급 규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연 10%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위 기간은 대가지급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0 조[이 행지체]

① “을”은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른 준공시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준공기일 다음날로부터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은 “을”에게 지급되는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 21 조[하자담보]

① “을”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제 조합 보증서와 보증보험 증권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이 “갑”으로부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하며,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갑”의 모든 손해에 대해서 “을”은 배상하여야 한다.

④ “갑”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을”的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을”的 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 22 조[을의 동시이행 항변권]

① “갑”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과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을”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지급치 않을 때에는 “을”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단, “을”的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급 지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 1 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시 공사기간에서 제외된다.

제 23 조[특허권의 사용]

공사의 시공이 특허권 기타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24 조[하도급의 제한]

① “을”이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 3 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사전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을”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안전사고 등 공사시행과정에서 발생한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 1 항에 따라 승인한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당해 하수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에 대하여 하수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수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 25 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갑”은 공사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공작물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본 공사와 관련하여 이 도급공사 범위 외에 속하는 공사를 제 3 자에게 도급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的 부분사용 및 타도급공사의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6 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 기일을 경과하여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的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소홀히 하여 예정공정대로 진척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을”的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을”이 정부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5. “을”이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또는 파산, 회사 정리, 화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혹은 타회사와 합병된 경우

6. “을” 또는 그 대리인, 기타 종업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갑”的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② 제 1 항의 규정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을”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공사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 기구들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한다.
2. “갑”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27 조[손해배상]

① 제 26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계약의 해지, 변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위반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8 조[권리의무의 양도]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없이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29 조[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0 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 1 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다.

③ “을”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1 조[합의 관할]

제 30 조의 규정에 의해 합의되지 않은 분쟁에 대해선, 본 계약의 합의 관할을 “갑”的 본점 소재지 관할 지역 법원으로 한다.

제 32 조[특약사항]

- ①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 ② “을”의 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 시 1 일 기준 계약금 3/1000 의 지연금을 “갑”에게 지급한다.